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활용

FTA 원산지상품의 관세품목분류 : 다이아몬드(제7102호)

임정율 | 도원합동관세사무소 관세사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활용

FTA 원산지상품의 품목분류: 다이아몬드(제7102호)



임정울

도원합동관세사무소 관세사



1. 다이아몬드

보석이란, 아주 단단하고 빛깔과 광택이 아름다운 희귀한 광물을 의미한다. 이러한 보석의 종류에는 다이아몬드, 에메랄드, 사파이어, 루비, 비취 등이 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보석은 관세율표상 귀석(貴石 - Precious stones)이라고 불리우며, 주로 제71류에 분류되고 있다.

그 중 다이아몬드는 세계적으로 가장 인기있는 보석이다.

다이아몬드는 탄소(Carbon)의 동소체이며 결정질로 순수한 상태에서 매우 높은 굴절률과 분산력을 갖는다. 자연물질 중 가장 단단한 물질로서 광물의 경도측정 표준인 모스 경도계 10(최고등급)에 해당한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다이아몬드는 절삭, 연마 등의 공구로 활용되기도 하고 귀걸이, 팔찌, 반지 등 신변 장식용품으로도 활용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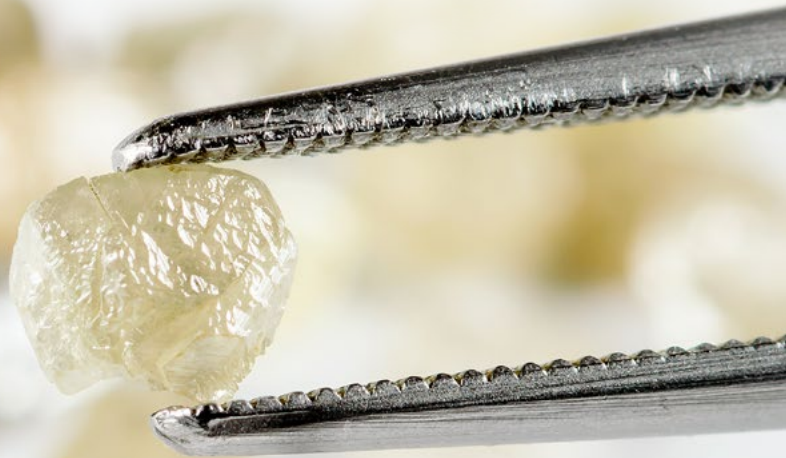
자연에서 다이아몬드는 대부분 지하 100~250km 부근의 맨틀층에서 형성된다. 1,100~1,300℃의 고온과 65,00kg/cm²(보통 대기압의 6,500배)의 고압에 의해 환경에서 생성된다.

1캐럿의 다이아몬드를 얻기 위해서는 약 250톤의 모암처리가 이루어지고, 생산된 모든 다이아몬드의 약 20%만이 보석용으로 사용되고, 나머지는 공업용으로 사용되는 것이다. 연마된 다이아몬드의 1캐럿의 비율은 0.001%로 매우 귀한 가치를 지닌다.






다이아몬드(보석)의 가치는 4C로 평가된다. 즉, 색(Color), 내포물(Clarity), 절개(Cut), 중량(Carat)이다.

색(Color)과 투명도(Clarity)는 다이아몬드 자체로 인해 가치가 부여되지만, 중량(Carat) 및 연마(Cut)의 경우 가공에 있어 가치창출이 되기도 하는 요소이다.

다이아몬드가 최고의 보석으로 자리매김 하게 된 것은 17세기 말 이탈리아에서 브릴리언트 컷 연마방법이 알려진 이후이고, 19세기 후반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대규모 다이아몬드 광산의 발견과 함께 발전된 채굴방법이 생겨남에 따라 대중화되기 시작한 것이다. 다이아몬드 원석의 종류와 형태는 표와 같다.



<표1> 원석의 종류와 형태¹⁾

No	형태	특징
1	 <p>Saveable</p>	<p>소잉(Sawing)이 가능한 8면체의 원석으로 가장 드문 형태이지만 연마가 쉽고 연마과정에서 버려지는 적어 가장 가격이 비싼 원석. 주로 두개의 라운드 브릴리언트 컷(Round Brilliant Cut)의 다이아몬드를 연마해 낼 수 있음 Yield 43±5%, Loss 57± 5%, Labor가 적게 들고 Value가 높음</p>
2	 <p>Makable</p>	<p>하나로 연마 가능한 12면체로 하나의 원석에서 하나의 다이아몬드만을 연마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원석을 뜻함 주로 인도에서 연마하는 Melee size(0.25Carat 이하, 일명 : 쓰부 다이아몬드)에 해당됨 Yield 30±5%, Loss 70±5%, Labor가 많이 들고 Value가 낮음</p>
3	 <p>Splittable</p>	<p>원석을 분리 작업을 해야만 하며 소잉(Sawing)이나 클리빙(Cleaving)으로 여러 개의 다이아몬드로 분할하여 연마할 수 있는 커다란 원석임 Yield 25±5%, Loss 75±5%, Labor가 많이 들고 Value가 낮음</p>
4	 <p>Macle</p>	<p>연마 난이도가 가장 높은 팬시컷(Fancy Cut) 모양의 에메랄드, 마퀴즈, 페어, 레이디언, 쿠션, 프린세스, 하트, 바게트, 테파, 하프 문, 드롭 형태 등의 다양한 모양의 다이아몬드를 연마함 Yield 25±5%, Loss 75±5%, Labor가 많이 들고 Value가 높음</p>
5	 <p>Flat</p>	<p>가장 저렴한 형태의 납작한 원석이다. 아주 작은 결정체의 사이즈 또는 주로 Melee size(0.25Carat 하, 쓰부) 다이아몬드로 여러 개로 연마하게 됨 Yield 25±5%, Loss 75±5%, Labor가 많이 들고 Value가 높음</p>

1) 김원주 · 김학민, 2018, 한 · 인도 CEPA에 따른 부가가치기준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2. 다이아몬드의 수출입 통계 및 FTA 활용현황

1) 다이아몬드 품목별 FTA 활용률

MTI 2단위 잡제품에 속해있는 보석 및 귀금속제품의 품목별 FTA 활용률²⁾을 살펴보면, 수입의 경우 높은 활용률과 증가세에 있는 반면, 수출의 경우 FTA 활용이 매우 미미(0%의 경우 타 품목의 수출금액의 증가로 백분율 표시에 따른 것)하다.

수출 FTA 활용에 대한 지표는 우리나라에서 다이아몬드 채굴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수의 협정에서 FTA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과

신변장식용품의 수출이 다수의 소규모 제조업자(공방 등)의 FTA 접근에 어려움이 있고, 활용률이 저조한 것에 일부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이아몬드의 원석·나석 및 제품들이 수입 FTA 활용도가 높은편으로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 점검해볼 필요가 있고, 다이아몬드가 사용된 제품으로 수출되는 신변장식용품, 귀석·반귀석의 제품에 대하여는 원산지결정기준을 활용하여 FTA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표2> 품목별 FTA 활용률 - 수출

MTI1	MTI2	2017년(누적)	2018년(누적)	2019년(누적)
잡제품	가발 및 가늄	11.30%	0.00%	0.00%
	기타 잡제품	16.40%	2.00%	0.00%
	무기류	54.60%	66.20%	5.20%
	보석 및 귀금속제품	29.90%	0.00%	0.00%
	수집품	0.00%	0.00%	0.00%
	안경 및 콘택트렌즈	80.10%	0.00%	0.00%
	예술품	3.00%	4.10%	0.00%
	의료위생용품	44.10%	26.70%	28.40%
	인쇄물	7.20%	17.60%	20.30%
	합계	47.30%	60.80%	8.40%

2) 관세청 YES FTA(<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main.do>)

<표3> 품목별 FTA 활용률 - 수입

MTI1	MTI2	2017년(누적)	2018년(누적)	2019년(누적)
잡제품	가발및가늌셋	7.50%	12.40%	92.50%
	기타잡제품	75.30%	88.90%	52.30%
	무기류	48.40%	78.10%	93.30%
	보석및귀금속제품	81.10%	87.30%	87.10%
	수집품	100%	100.00%	100%
	안경및콘택트렌즈	74.00%	85.80%	89.30%
	예술품	100.00%	100.00%	100.00%
	의료위생용품	98.60%	97.90%	98.50%
	인쇄물	99.60%	100.00%	99.90%
	합계	80.20%	88.50%	69.00%

- 15개 협정(52개국)을 대상으로 산출
- 수출활용률 =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실적 / FTA 특혜대상품목 수출실적 * 100
- 수입활용률 = FTA 협정세율 적용실적 / FTA 특혜대상품목 수입실적 * 100
- MTI(Ministry of Trade and Industry) : 산업부에서 통계분류를 위해 편의상 비슷한 종류의 HS번호를 묶어 코드와 품목명을 부여한 체계

2) 다이아몬드의 국가별 수출입 통계

우리나라의 3년간 다이아몬드 수출입은 제7102.39호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가장 거래가 활발한 국가는 인도이다.

인도는 저렴한 노동력과 인프라로 수많은 다이아몬드 가공 공장이 생기게 되었고 인도 은행들은 사이트 홀더(Sight-holder)회사를 금융 지원하며 국가산업의 중심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인도 서부 구자라트州的 수라트 경제특구는 전 세계에서 유통되는 다이아몬드의 80%를 가공하는 지역으로 원석 가공·연마 후 제3국으로 역수출하고 있다(인도 뉴델리무역관, 2015).

홍콩의 경우 가공·연마된 다이아몬드의 글로벌 마켓이 형성되어, 수출입거래가 일어나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하늘길이 막히면서 현물확인 후 거래를 수행하는 보석시장의 거래문화에도 변화가 조금씩 생기고 있다.

<표4> 2017 ~ 2019 년 품목별 수입금액 상위3 국가³⁾

[단위 : 천 불(USD 1,000)]

품목코드	국가명	수입금액합계
제7102.10호 선별하지 않은 다이아몬드	벨기에	9
	중앙아프리카공화국	49
제7102.21호 선별된 공업용 다이아몬드 원석	남아프리카공화국	1,330
	벨기에	1,845
	보츠와나	1,903
제7102.29호 선별된 공업용 기타 다이아몬드	벨기에	151
	영국	86
	중국	224
제7102.31호 선별된 공업용이 아닌 다이아몬드 원석	남아프리카공화국	38
	라이베리아	15
	탄자니아	100
제7102.39호 선별된 공업용이 아닌 기타 다이아몬드	벨기에	4,834
	인도	170,696
	홍콩	121,03
총합계		194,168

<표5> 2017 ~ 2019 년 품목별 수출금액 상위3 국가⁴⁾

[단위 : 천 불(USD 1,000)]

품목코드	국가명	수출금액합계
제7102.21호 선별된 공업용 다이아몬드 원석	영국	378
	벨기에	42
	미국	22
제7102.29호 선별된 공업용 기타 다이아몬드	대만	42
	베트남	8
	영국	8
제7102.39호 선별된 공업용이 아닌 기타 다이아몬드	홍콩	5,679
	인도	852
	이스라엘	490
총합계		7,9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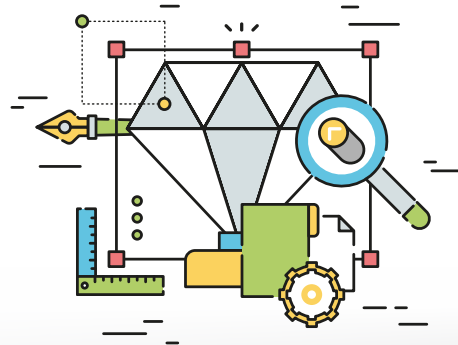
- 2017~2019년 품목별, 국가별 수출입무역통계 자료를 기초로 재작성
- USD 1,000 미만의 통계는 포함하지 않음

3) 수출입무역통계(<https://unipass.customs.go.kr/ets/index.do>)4) 수출입무역통계(<https://unipass.customs.go.kr/ets/index.do>)

3. 다이아몬드의 품목분류 및 FTA 원산지 결정기준

1) 다이아몬드의 품목분류

관세율표상 제7102호에는 다이아몬드원석 및 나석이 분류된다. 여기서 나석이란, 가공(Cut, 연마)된 것으로 보석제품으로 갖추어 지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표6> 제7102호의 품목분류

HS code	호의 용어	
7102	다이아몬드(가공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장착되거나 세트로 된 것은 제외한다)	
7102	10	선별하지 않은 것
7102	2	공업용
7102	21	원석(단순히 톱질한 것이나 쪼갠 것으로 한정한다)
7102	29	기타
7102	3	공업용이 아닌 것
7102	31	원석(단순히 톱질한 것이나 쪼갠 것으로 한정한다)
7102	39	기타

(1) 제7102.10호

제7102.10호에는 다이아몬드를 채굴하기 위한 모암처리 등으로 획득되었으나 선별되지 않은 다이아몬드가 분류된다.

이 소호에는 또한 체로 친 후 크기에 따라 포장되었거나 그 이상 전문가의 감정을 받지 않은 원석의 다이아몬드의 꾸러미를 포함한다.

다이아몬드는 모암처리를 통하여 획득되고 가공되지 않거나 또는 공업용, 비공업용으로 시장에서 판매되기 전에 다이아몬드 전문가들에 의해 기술적 기준에 따라 등급화 되고 선별된다.

선별에 분류되는 기술적 기준 4C기준이 적용되어 중량, 커팅할 때의 결정학상의 적합성, 형태·투명도 색상과 결정체의 순도나 질 등이 고려된다.

(2) 제7102.21호 및 제7102.29호

제7102.21호 및 제7102.29호에는 공업용으로써 천연의 선별된 원석(단순히 톱질한 것이나 쪼갠 것으로 한정한다) 및 기타 다이아몬드가 분류된다.

채굴과정을 통하여 획득된 다이아몬드로써, 4C 기준에 의해 선별되어 보통 신변장식용품이나 금·은 세공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다이아몬드는 일반적으로 공구에 세팅하거나 기계부속품 또는 기계에 부착시키는 용도로 사용된다.

제7102.21호에 원석에는 단순히 톱질한 것(예: 얇은 스트립 모양으로)·쪼갠 것(자연적인 결정면의 층을 따라 쪼갠 것)·다듬은 것·툼블링한 것이나 단지 적은 수의 연마된 면을 갖고 있거나 잘게 부서거나 파쇄한 다이아몬드 즉, 단지 일시적인 모양의 원석으로서 명백히 추가적 가공을 거쳐야 하는 것들이 분류된다.

제7102.29호는 광택을 내거나, 구멍 뚫린 다이아몬드와 조각된 다이아몬드를 포함한다.

(3) 제7102.31호 및 제7102.39호

제7102.31호 및 제7102.39호에는 공업용이 아닌 것으로써 천연의 선별된 원석(단순히 톱질한 것이나 쪼갠 것으로 한정한다) 및 기타 다이아몬드가 분류된다.



이는 모든 다이아몬드 중 약 20%를 차지하는 소수의 상업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4C 특성으로 인하여 신변장식용품 세공사나 금·은 세공사에 의하여 사용이 적합한 것이다.

제7102.31호에는 천연 상태의 다이아몬드, 단순히 톱질한 것·쪼갠 것(자연적인 결정면의 층을 따라 쪼갠 것)·거칠게 다듬은 것이나 단지 적은 수의 연마된 면을 갖고 있는 다이아몬드(다이아몬드의 내부적인 특징을 전문가가 감정할 수 있게끔 거의 만든 것) 즉, 단지 일시적인 모양으로 명백히 추가적 가공을 거쳐야 하는 것과 텀블링한 다이아몬드로서 화학적 처리에 의해 표면이 광택이 있고 반짝이도록 한 것이 포함된다.

제7102.39호에는 다수의 평평한 연마표면이나 연마 면이 있는 연마된 다이아몬드로서, 신변장식용품으로서 사용하기 전에 추가적인 작업이 요구되지 않는 것, 구멍 뚫린(drilled) 다이아몬드·조각한(engraved) 다이아몬드(음각과 양각을 포함한다)와 이중접합이나 삼중접합으로 가공한 다이아몬드, 운송이나 저장 과정에 깨진 연마 다이아몬드뿐만 아니

라 연마·천공(穿孔 : drilling)이나 조각 과정에 깨진 다이아몬드를 포함한다.

다만, 단지 적은 수의 연마된 면(예: 원석의 다이아몬드의 내부적인 특징을 전문가가 감정할 수 있도록 만든 원도우)을 갖고 있으며 명백히 추가 가공을 거쳐야 하는 다이아몬드와 오직 확인 목적을 위해 조각된 다이아몬드는 제외된다.

2) 다이아몬드 원석의 FTA 원산지 결정 기준(제7102.10호, 제7102.21호, 제7102.31호)

다이아몬드 원석(제7102.10호, 제7102.21호, 제7102.31호)이 FTA에 따른 원산지상품 자격을 가지려면 다음과 같은 협정별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한-인도 CEPA의 경우 협정에서 기본으로 정하고 있는 조합기준(6단위 세번변경+역내부가가치 35% 이상)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한-아세안, 한-베트남 협정의 경우 선택기준으로 6단위세번변경 또는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 발생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그 외의 한-미국, 칠레, 호주, 중국, 싱가포르, 뉴질랜드, 페루, 콜롬비아, EFTA, 캐나다, 중미 협정에서는 세번변경기준(아래 표 참조)을 적용하고 있다.

다이아몬드 원석(제7102.10호, 제7102.21호, 제7102.31호)은 다이아몬드 채굴을 통하여 획득되거나(제7102.10호), 선별과정을 통하여 공업용

(제7102.21호) 또는 공업용 이외의 것(제7102.31호)으로 구분된 물품이다.

따라서 제7102.10호의 것은 완전생산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는 품목에 해당하고, 이를 단순 선별한 것은 각 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최소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원산지결정기준은 큰 의미가 없다.

천연 다이아몬드는 다른 물질로부터 인위적으로 생산될 수 없고, 인조 다이아몬드는 관세율표상 제7104호에 분류된다.

<표7> 다이아몬드 원석류의 FTA 원산지결정기준

HS code	제7102.10호 - 선별하지 않은 다이아몬드 제7102.21호 - 공업용 다이아몬드 원석 제7102.31호 - 공업용 이외의 다이아몬드 원석
협정명	원산지결정기준
미국, 칠레, 호주, 중국, 싱가포르, 뉴질랜드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페루, 콜롬비아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EFTA, 캐나다, 중미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아세안, 베트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EU, 터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가공하지 않은 귀석 또는 반귀석으로부터 생산된 것 2.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인도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35%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3) 선별된 다이아몬드 원석의 FTA 원산지 결정기준(제7102.21호, 제7102.31호)

선별된 다이아몬드 원석의 FTA 원산지 결정기준은 제7102.10호의 원산지결정기준과 모든협정이 동일하다.

이 경우 제7102.10호에서 선별작업을 통하여 각각 제7102.21호 또는 제7102.31호로의 물품으로 분류되는데, 대부분의 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불인정공정(예: 감별, 체질, 선별, 분류, 등급화 또는 매칭)에

해당하여 원산지상품의 지위를 획득할 수 없다.

한-미 FTA에서는 별도의 불인정공정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으나, 2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완전생산기준 충족 이외에는 충족 할 수 없다.

한-캐나다 FTA 역시 별도의 불인정공정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6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협정 제3장 제3.3조에 따른 충분한 생산 규정에 충족하는지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표8> 다이아몬드 원석류의 FTA 원산지결정기준

HS code	제7102.21호 - 공업용 다이아몬드 원석 제7102.31호 - 공업용 이외의 다이아몬드 원석
협정명	원산지결정기준
미국, 칠레, 호주, 중국, 싱가포르, 뉴질랜드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페루, 콜롬비아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EFTA, 캐나다, 중미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아세안, 베트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EU, 터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가공하지 않은 귀석 또는 반귀석으로부터 생산된 것 2.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인도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35%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4) 원석 외의 다이아몬드(나석)의 FTA 원산지 결정기준(제7102.29호, 제7102.39호)

원석 이외의 다이아몬드는 한-중국 FTA를 제외하고 제7102.10호에 적용되는 원산지결정기준과 동일하다.

제7102.29호 및 제7102.39호는 각각 선별된 원석을 가공하여 공업용 또는 신변장식용품 등 특정 용도로

사용하기에 적합하게 만든 다이아몬드가 분류되는데, 다이아몬드 원석(제7102.21호 및 제7102.31호)와는 다르게 가공을 거쳐야 하므로, 불인정공정 및 중분가공원칙 위배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을 활용하여 FTA 원산지상품의 지위를 획득할 수 있다.

<표9> 다이아몬드 원석류의 FTA 원산지결정기준

HS code	제7102.29호 - 공업용 기타 다이아몬드 제7102.39호 - 공업용 이외의 기타 다이아몬드
협정명	원산지결정기준
미국, 칠레, 호주, 싱가포르, 뉴질랜드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페루, 콜롬비아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EFTA, 캐나다, 중미, 중국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아세안, 베트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EU, 터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가공하지 않은 귀석 또는 반귀석으로부터 생산된 것 2.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인도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35%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